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재기 공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5856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 김지운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변환봉, 법무법인 건진 담당변호사 박필서

피고 : 유왕돈

2. 총원의 범위

피고, 소외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소외 장철 등이 시세조종을 시작한 2010. 12. 30.부터 시세조종 종료일 다음 거래일인 2011. 3. 2.까지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정상주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자들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1)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임)

(2) 청구의 원인

피고,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장철 등은 공모하여 2010. 12. 30.부터 2011. 2. 28.까지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주식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여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총원)은 정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진매트릭스의 주식으로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등은 총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 및 제179조).

4.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법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

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동근